㈜클라우드	구분	직위	성명	일자	서명
침해사고관리지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	승인	정보보호 최고책임자	홍길동	2019.01.01	
운영문서로서 검토되고 승인됨	검토	정보보호 담당자	장길산	2019.01.01	

㈜클라우드 침해사고 관리지침

2019. 01. 01

㈜클라우드

문서 제ㆍ개정 이력				
번호	날짜	쪽	내용	담당자
1	2019-01-01	-	최초 작성	홍길동

본 문서는 침해사고관리지침에 대한 예시이며,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 형태,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㈜클라우드의 「정보보호정책서」에 의거 침해사고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㈜클라우드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㈜클라우드와 계약을 맺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업체 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.
- 제3조(용어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침해사고"라 함은 보안정책에 위배되는 모든 사고를 말하며 보안 침해사고, 소프트웨어 이상 및 오류, 악성코드 등으로 인한 정보자산의 손상 등을 포함한다.
 - 2. "악성코드"라 함은 컴퓨터바이러스와 달리 다른 파일을 감염시키지는 않지만, 악의적 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유해 프로그램을 말한다.
 - 3. "백도어"라 함은 시스템의 정상적인 보호 수단을 우회할 수 있는 숨겨진 메커니즘을 의미한다.

제2장 침해사고 대응절차 및 체계

- 제4조(침해사고 대응 절차 수립) ① 침해사고의 정의 및 범위, 긴급연락체계 구축, 침해사고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절차, 사고 복구조직의 구성 등을 포함한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침해사고를 유형 및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에 따른 이에 따른 보고체계를 정의하여야 한다.
 - ③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외부 기관을 통해 구축한 경우 수립된 침해사고 대응절차 및 체계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④ 침해사고의 모니터링, 대응 및 처리와 관련되어 외부 전문가, 전문업체, 전문기관(KISA) 등과의 연락 및 협조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5조(침해사고 예방) ① 정보시스템별 담당자는 필요 시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현장방문 또는 원격 측정을 통하여 사이버안전대책 이행 여부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한다.
 - ② 정보시스템별 담당자는 보안관제시스템 또는 오프라인 등을 통해 사이버 위협 정보를 인지한 경우에는 초동조치 후 관련 기관에게 신속히 통지한다.
 - ③ 정보시스템별 담당자는 보안정보, 보안권고문, 또는 취약점 분석정보를 수시로 수집하여 보안업데이트 및 대응조치를 수행하고, 직원들에게 배포한다.
- **제6조(침해사고 대응 훈련)** ①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관한 연 1회 이상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 하고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 실시 및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.

- ② 이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의 결과를 요청할 경우 이를 무서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.
- **제7조(침해사고 보고)** ① 외부로부터의 침해시도가 의심되는 이상징후를 지체없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
 - 1. 모니터링 대상범위 : 침해시도 탐지 및 차단하기 위한 각종 정보보호시스템 이벤트 로그 등
 - 2. 모니터링 방법 :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모니터링, 자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
 - 3.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
 - 4. 모니터링 결과 보고체계
 - 5. 침해시도 발견 시 대응절차 등
 -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상의 침해사고 정후 또는 침해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침해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침해사고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경우 최고 경영진에게 신속히 보고
 - 침해사고 초기 대응 및 증거 보존 조치
 - ③ 침해사고 발생 시 법률이나 규정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침해사고는 이용자(정보주체)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8조(침해사고 대응) ① 정보보호 침해사고 접수 후 정보시스템별 담당자는 침해사고 유형 별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.
 - 1. 침해사고가 확대되지 않도록 침해당한 서버의 네트워크 분리, 공격 포트의 차단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먼저 취한다.
 - 2. 침해사고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정보시스템의 중단이 통계청 전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업무시간 종료 후에 서비스를 중단하며, 해당 정보시스템의 중단이 일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부서와 협의 후 즉시 해당 정보시스템을 중단시킨다.
 - 3. 응급조치 후 정보보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증거확보를 위하여 해당 침해사고 관련 로그 및 제반 증거자료를 수집 및 확보해야 한다.
 - 4. 국가정보원 등에서 권고하는 유형별 대응 조치를 취하고,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.
 - ② 정보보호 침해사고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- 1. 악성코드 공격
 - 2. 서비스거부 공격
 - 3. 비인가접근 공격

- 4. 복합구성 공격
- 제9조(비상연락체계 구축) ① 업무별 시스템 담당자 및 관련 외부 사업자(PM)의 이름과 연락처를 상시 관리하여야 하며, 정보보호 관련 상주 근무자, 외부 유지보수 협력업체, 유관기관등 비상연락체계를 비치하고, 주기적으로 비상연락망을 점검한다.
- 제10조(침해사고 분석) ① 정보보호 관리자는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 사고 유형 및 등급에 따라 보안사고 대응팀을 구성하고,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.
 - ② 보안사고 대응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안사고 분석 및 로그 수집을 수행한다.
 - 서버 및 네트워크 담당자와 정보보호 담당자는 보안사고 내용을 분석하여 침입 사실, 사고원인 등을 파악한다.
 - 서버 및 네트워크 담당자는 증거확보를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로그 중 침입흔적을 담은 모든 로그를 백업한다.
 - 파일시스템은 상세한 수준으로 덤프를 받은 후, 서명, 일시 등을 기록하고, 덤프파일은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.
 - 정보보호 담당자는 정보보호시스템 로그를 점검하여 관련기록을 모두 백업받고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.
 - 재침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네트워크 접속을 끊거나 단일 사용자(Single -User)모드에서 작업해야 한다.
 - ③ 침입자가 현재 시스템에 침투해 해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취한다.
 - 정보보호 담당자는 정보보호 관리자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즉시 해당 시스템을 네트워크 와 분리한 후,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추적여부를 결정한다.
 - 침입 후 활동하는 내용이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 인하에 로그 분석을 통하여 침입위치 및 침입대상을 추적한다.
 - 침입자를 추적할 수 없거나,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의 보호가 우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.
 - ④ 정보보호 관리자는 보안사고 분석 및 대응 업무 수행 중 필요에 따라 외부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. 이때 협조 의뢰의 최종결정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한다.
- 제11조(증거수집 및 보존) ① 서버 및 네트워크 담당자와 정보보호 담당자는 제10조에서 분석 및 수집한 증거를 정보보호 관리자에게 전달한다.
 - ② 정보보호 관리자는 침입자 처벌 및 법률적 대응을 위해, 수집된 증거를 사고발생 후 공소 시효까지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.

- 제12조(결과보고 및 공유) ① 침해사고가 처리 및 종결된 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 또한 유사한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침해사고 관련 정보 및 발견된 취약점을 관련 조직 및 임직원과 공유하여야 한다.
 - ② 정보보호 담당자는 보안사고대응팀의 각 관련 부서에서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보보호 관리자에게 보고하며, 정보보호 관리자는 보안사고 1, 2급에 대하여 보안사고 조치 보고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사고 경과와 조치사항을 보고한다.
 - 보안사고 분석결과
 - 보안사고 대응내역
 - 조치계획 및 조치내역
 - 재발방지 방안 및 계획
 - ③ 개인정보 사고의 경우 보안사고대응팀은 사고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및 대응을 수행한다.
 - 고객이나 언론의 동향 분석
 - 법률 Risk 파악
 - 피해고객 구제방안 모색 등 사고대응 활동
 - ④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우 개인정보관리 담당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유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 -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
 -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과 그 경위
 -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
 - 회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
 - 정보주체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
 - ⑤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통보 항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사후관리) ① 정보보호 관리자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정책 및 지침의 개정, 정보보호시스템 도입,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, 필요 시 보안사고 대응절차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.
 - ② 정보보호 관리자는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여 동일 또는 유사 사고의 재발에 대비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의 대응 및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③ 정보보호 담당자는 1, 2 등급의 보안사고 관련된 기록을 대외비 이상 등급으로 분류하고, 이를 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

- ④ 법적 또는 규정상 보안사고 관련하여 대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외협력 관련부서는 정보보호 관리자와 협의 후 대응하여야 한다.
- ⑤ 정보보호 관리자는 보안사고에 대한 정보와 발견된 취약점들을 관련 부서 및 임직원들에 게 공유 및 전파하여야 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침해사고 대응결과 보고서

침해사고 대응결과 보고서

	정보보호	정보보호	정보보호
	관리자	책임자	최고책임자
결 재			

침해사고 대응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되어야 한다.
□ 침해사고 발생 일시/종료 일시
□ 침해사고 발견 및 피해사항
□ 침해사고 조치 내용
✓침입시도 IP Address
✓ 침입시도 방법
✓ 침해사고 분석 방법
* BMM
✓ 침해사고 복구 방법
□ 침해사고 영향 범위 (침해사고가 발생한 시스템/피해내역)
□ 침해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

[별지 제2호 서식]비상연락망

비상연락망

1. 보안사고대응팀 연락망

담당업무	담당자	연락처

2. 관련부서연락망

부서명	담당자	담당업무	연락처

3. 관련업체 연락망

업체명	담당자	담당업무	연락처

4. 관계기관 연락망

기관명	담당자	담당업무	연락처